



제249회 임시회  
2006. 4.

# 전문위원 검토보고

- 충청북도지방공사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교육사회위원회

# 전문위원 검토보고

□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□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06년 4월 14일

○ 회부일자 : 2006년 4월 17일

□ 제안 이유

- 지방의료원의 설립·운영에 관한 근거법령이 「지방공기업법」에서 새로 제정(2005.7.13)된 「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로 바뀔에 따라,
- 동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외의 의료원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서 정하고자 전면 개정하는 것임

□ 주요 내용

- 의료원의 소재지와 명칭을 정함(안 제2조)
  -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(충주)의료원 → 충청북도청주(충주)의료원
- 지방의료원 임원의 구성을 정함(안 제3조)
  - 이사장(원장이 겸임) : 1인
  - 이 사 : 6인 이상 10인 이하 ※ 이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함
  - 감 사 : 1인
  - 원장과 원내 직원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는 비상근으로 함
- 지방의료원장 임용후보자의 최소 자격기준을 정함(안 제5조)

- 지방의료원의 운영·위탁규정을 명시(안 제6조)
  - 지방의료원의 진료수준 향상 및 경영개선을 위하여 지방의료원 운영의 전부, 또는 일부를 대학병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.

## □ 검토 의견

- 본 조례안은,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법령인 「지방공기업법」이 지난 2005년 7월 13일자로 「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로 바뀜에 따라 의료원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서 정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,
- 주요내용은 충청북도 지방의료원의 명칭과 소재지, 임원의 구성, 원장의 자격기준, 운영의 위탁 규정, 과태료 부과기준 등 상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전부개정이 타당 하다고 판단됨.
- 다만, 「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부칙 제 3조(조례 및 정관에 관한 경과조치)에 “지방자치단체는 이법 시행후(2005.9.14) 6월(2006.3.13)이내에 조례 및 정관을 정비하고 등기사항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”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필요한 조치내용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 하다고 사료됨.

붙 임 : 충청북도지방공사의료원설립 및 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